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정 2007.02.21.

개정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9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라 함은 우리대학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실험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을 말한다.(신설20181231)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40904,20181231)
4. “정기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20140904,20181231)
5.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개정20181231)
6.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환경관리자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개정20140904,20181231)
7.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학과 단위로 사용되는 실험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해당 학과장 및 담당교수를 말한다.(신설20181231)
8.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해당 실험실의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각 학과 조교를 말한다.(개정20181231)
9.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신설20181231)
10. “연구실사고”란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20181231)
11. “중대한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 사고 중에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신설20181231)
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실험·실습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발굴 및 분석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실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신설20181231)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안전관리조직) 우리대학 실험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및 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험실이 있는 학과는 학과장이 위원이 되며,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090212,20110901,20140904)
2. 총무처 관리팀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실험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보좌한다,
3.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선임 한다.(개정20181231)

제4조(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실험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8.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9.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와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1. 학과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 가. 각 학과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학과의 장 또는 조교수 이상의 담당교수로 하며, 학과 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개정20181231,20221230)
 - 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며, 실험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신설20181231,개정20221230)
 - 다.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20181231)
 - 1) 실험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3) 실험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20221230)
 - 5)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신설20221230)
 - 7)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개정20221230)
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 가.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별로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나.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의 2인을 둔다. 정은 해당 실험실의 담당(지도) 교수가 되며, 부는 조교 중에서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개정20140904)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개정20140904)
 - 가. 실험실 사고발생 시에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조언
 - 나.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및 실험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도와 조치 건의
 - 다. 실험실 상황에 따라 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 라. 안전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실험실 안전에 관한 업무
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정”의 직무
 - 가. 실험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사항
 - 나. 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20140904)
 - 다. 실험실 운영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라.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3.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부”의 직무

실험실 안전 관리자 정의 지시에 따라 실험실 안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실험실의 안전조치

제9조(자체안전점검) 실험실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실험실 자체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처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안전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체점검의 기록은 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점검 시에 확인한다.(개정20140904)

제10조(정기점검)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1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다. 단,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40904)

1. 개인안전 장비관리
2. 전기 안전
3. 소방 안전
4. 화학약품관리
5.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
6. 가스 및 위험물 안전
7. 기계설비 안전
8. 기타 실험실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제10조의2(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 등)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내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야한다. (신설20181231)

①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직원 및 학생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실험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 화학물질 전도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
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도된 화학물질 제거

3. 화학물질 제거 시에는 주위의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조치

③ 기타사항 및 행동요령은 각 실험실에 비치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10조의3(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피해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 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다.)(신설20181231)

②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실험실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③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신설20181231)

④ 중대 실험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사고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⑤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실험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제11조(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험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개정20140904)

제11조의2(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험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제12조(교육 및 훈련)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20181231)

1.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별표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40904,20181231)

가. 교육훈련은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조교수 이상 또는 안전 전문강사가 담당(신설20181231)

나. 교육과정은 신규채용(신입생) 시 2시간 이상, 정기교육(신입생 및 재학생)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을 소유한 학과는 학기별 6시간 이상, 그 밖의 학과는 학기별 1.5시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20181231, 개정20221230)

다. 신규교육을 받은 신입생은 해당년도 1학기 정기교육을 면제한다.(신설20181231)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실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신규교육(지정된 후 6개월이내)은 18시간 이상, 보수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은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개정20140904,20181231)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20140904,20181231)

제13조(안전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험실별로 받아야 할 과목은 다르게 적용한다.

1. 개인안전 장비관리 - 전체
2. 전기 안전 - 전체
3. 소방 안전 - 전체
4. 응급처치요령 및 비상시 행동요령 - 전체
5. 실험장비 및 기구의 취급 - 전체
6. 화학약품관리 - 화학약품 실험실 대상
7.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 - 폐기물 발생 실험실 대상
8. 가스 - 가스 사용 실험실
9. 공작실 안전 -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실험실 전체
10. 사고시의 행동요령 - 전체

제14조(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출입을 제한한다.(개정20140904)

제15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자체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총무처 관리팀에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험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가의 실험기기가 설치되었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20140904)

제16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사항
2. 자체점검 기록
3. 안전교육 기록

4.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5.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6. 폐기물 안전(감염물, 동물 사체, 폐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7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실험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실험실의 연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제18조의2(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1.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보상금액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적합하도록 가입한다.

제19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 ②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한다.(신설20181231)
- ③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관리한다.(신설20181231)

제20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2]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20181231)

제 4 장 보 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20181231)

부 칙(20070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97호 200902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02호 2011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249호 201409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12호 201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341호 2022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신설20181231,개정20221230)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신규 교육 · 훈련	근로자	가.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 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 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정기 교육 · 훈련	가.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11조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 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3.특별안전교육 · 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별표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신설20181231)

1. 금지 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 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신 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 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 비상구	408 우측 비상구	관계자와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의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외/사용/보관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시 예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비교: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안전·보건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302	M017
103	P006	303	M016
106	P002	304	M019
107	P003	305	M014
206	W003, W005, W027	306	M003
207	W012	307	M008
208	W015	308	M009
209	W035	309	M010
210	W017	402	E003
211	W010	403	E013
212	W011	404	E011
213	W004	406	E001, E002
215	W001	407	E001
301	M004	408	E002